



축산경영과 · 축산물유통과의 신설배경과 주요업무

농림수산부 축산국 축정과

1. 머리말

지난 2월에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농산물수입개방 등 국제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의 직제를 개정할 때 축산국의 직제도 종전의 축정과 · 대가축과 · 중소가축과 · 초지사료과 · 가축위생과에서 축정과 · 축산경영과 · 축산물유통과 · 초지사료과 · 가축위생과로 재편되었다. 대가축과와 중소가축과가 폐지되고 축산경영과와 축산물유통과가 신설된 것으로서 내용면에서 종전의 축종별 축산행정조직이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 축산국 직제개편의 배경과 신설된 과의 주요업무를 알아보기로 한다.

2. 직제개편의 배경

농림수산부 축산국의 직제개

편의 배경은 위에서의 농림수산부 직제개편의 배경에서와 같이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농산물수입개방 등 국제여건변화에의 능동적 대처에 있음은 물론이다.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은 국가경제의 성장발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성장혜택을 적게 받은 농어촌경제를 조속히 발전시켜 농어촌에서도 도시에 못지않은 소득과 생활복지를 향유하게 함과 아울러, 균형된 국가발전을 도모코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축산물의 수입개방도 불가피하게 빠른 속도로 진전될 전망이다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축산의 발전을 지원할 행정조직과 기능도 그러한 목적과 상황에 부응하여 재편되고 전환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축산의 사회 · 경제적 기능은 소비자인 국민이 필요로 하는 축산물을 생산 · 공급하면서 양

축가에게는 소득을, 유통종사자에게는 용역의 대가를, 국민인 소비자에게는 소비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기능은 축산물의 수급량이 증가하고, 그 내용이 다양해짐에 따라 복잡다기화 되어가고 있으며, 단계별로 전문화를 요하고 있다.

이와같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종전의 축종별 편제 즉, 소 · 말 등 대동물에 있어서의 개량, 사육, 유통, 수급 및 가격에 관한 업무는 대가축과에서 관장하고, 돼지 · 닭 등 중소가축에 관한 업무는 중소가축과에서 도맡아 하는 구조로서는 축종별 업무분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축종마다의 생산-소비 전과정을 담당함에 있어서는 단계별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급변하는 행정여건을 기민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기능별 편제 즉, 축종 구분없이 개량, 사육, 유통, 소비 등 단계별로 공통되는 기능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는 구조에서는 전문성을 높여 나갈 수 있으나, 축종별 업무한계가 모호하다. 예컨대 돼지가격이 크게 떨어졌을 때 이의 대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적기를 놓치거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일부 축종에서는 행정적인 소관이 분명치 아니하여 이로 말미암아 정부의 시책적 지원이 그나마도 끊기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도 일고 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에서 소요인력을 증원 확보하기란 그리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축산물의 생산·공급과정에서 축종이 아닌 기능별로 공통분야를 묶어 전문화시키는 것이 업무의 강도를 높여 인력을 절감함과 아울러, 기능의 전문화를 통해 새로운 여건변화에 발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예컨대 축산물도매시장에서는 소와 돼지가 함께 출하되어 도축·상장·경매과정을 거쳐 유통되기 때문에, 도매시장 제도개선이라는 과제를 놓고 볼 때 소·돼지로 분산시켜 접근하는 것보다는 유통이라는 단일기능으로 전문화하여 접근

하는 것이 개선의 폭과 깊이 면에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클 것이다.

다만 기능별 재편에 따른 축종별 소관 불분명 등의 문제점은 관련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기능확대를 통한 홀로서기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과별 주요업무

직제개편에 따른 과별 소관 업무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가. 축정과

(1) 축정업무에 관한 사항

- 축산국의 예산편성 및 집행
- 축산물의 통상협상대책지원
- 축산물의 수출촉진에 관한 사항
- 축산물의 수출입제도에 관한 사항
- 축산관련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 축산진흥대회개최에 관한 사항
- 축산부문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관리

(2) 축산물수급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 장·단기축산시책의 기본

방향 수립

- 장·단기축산업의 육성발전계획
- 축산물수급 및 가격제도 개선
- 해외축산물수급제도 및 동향 조사
- 축산해해대책업무
- 축산관련법령 운영관리
- 축산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축산금융제도 업무에 관한 사항

- 축산진흥기금 운영관리
- 축산자금지원 총괄
- 축산사업차관 및 합작투자에 관한 사항 총괄
- 축산금융제도 개선
- 축산관련세제 개선
- 축산업협동조합 지도감독
- 축산물유통사업단 지도감독

(4) 마사진흥업무에 관한 사항

- 마사진흥기본계획 수립운영
- 마필개량증식 및 이용지도장려
- 경마제도 개선
- 지방경마 육성
- 한국마사회 지도감독
- 마사회법 운용관리
- 조랑말 보호육성

나. 축산경영과

(1) 경영업무에 관한 사항

- 축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축산경영개선지도
- 축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 축산업의 전업화 추진
- 축산업의 등록·허가제 운영
- 축산기자재에 관한 사항
- 축산관측
- 자조금제도
- 특수가축(소, 돼지, 닭 제외)에 관한 사항(수출입과 그 관세 포함)
- 특수가축관련단체 지도감독
- (2) 가축개량업무에 관한 사항
 - 가축개량기본계획 수립추진
 - 가축개량의 진도분석 및 평가
 - 종축의 능력검정에 관한 사항
 - 가축인공수정사업에 관한 사항
 - 종축, 정액 및 수정란수출입과 그 관세에 관한 사항
 - 국립종축원 및 도립종축장의 개량업무에 관한 사항
 - 한국종축개량협회 지도감독
- (3) 낙농업무에 관한 사항
 - 낙농발전기본계획 수립추진
 - 우유수급안정대책
 - 낙농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 집유선관리 및 원유가격조

정

- 낙농기술보급 및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낙농진흥법 관리운영
-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한국유가공협회 지도감독
- 유가공산업에 관한 사항
- 유제품의 수출입과 그 관세에 관한 사항

다. 축산물유통과

(1) 소 및 쇠고기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 쇠고기 수급계획 수립
- 소 및 쇠고기 가격동향 관리
- 소 및 쇠고기 가격안정대책
- 소 및 쇠고기 수매비축
- 수입 및 비축쇠고기 방출 및 정산
- 소 및 쇠고기 수출·입과 그 관세에 관한 사항
- 쇠고기 취급관련단체 업무 지도 감독
- 쇠고기 보세가공업무
- 전시축산물 수급대책

(2) 가축(돼지·닭에 한한다) 및 축산물(쇠고기, 우유제외)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계획 수립
- 가축 및 축산물의 가격동향 관리
- 가축 및 축산물의 가격안정대책 추진

- 가축 및 축산물의 수매비축
- 수입·비축 축산물의 방출 및 정산
- 가축 및 축산물의 수출·입과 그 관세에 관한 사항
- 축산물 유통예고
- 육가공(보세가공 포함)업무에 관한 사항
- 돼지, 닭 관련단체 지도감독
- 돼지고기, 닭고기 조리법 개발
- (3)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 유통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 추진
 - 도매시장 및 공판장 운영에 관한 사항
 - 가축시장 재편 및 시설개선 지도
 - 가축공제 제도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 계란집하장 사업에 관한 사항
 - 육류등급제 및 부위별 차등가격제
 - 식육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4) 유통지도업무에 관한 사항
 - 도축장·도계장 권역화 및 적정배치 계획 수립
 - 도축장, 도계장 시설 및 유통관리
 - 축산물유통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 모피가공업무에 관한 사항